

# 제 안 설명서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안】

윤옥식 의원 외 9인

##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223

제출년월일 : 2005. 10. 19.

제출자 : 윤옥식의원 외 9인

### 1. 제안이유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내용과 축제 예산 지원 및 축제 평가에 대한 제반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축제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위원회에서 축제 등의 결과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 다. 위원회에서 축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3. 자치법규안 : 붙임

##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 축제의 내용 및 개최의 조정, 개최결과의 평가, 예산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영주시 지역축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제, 문화제, 예술제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며, 행사를 참여자가 집단성을 보이고 행사의 종류가 복합적인 구성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으로 구분하고, 단순한 문화 행사, 일회성의 이벤트는 축제 분류에서는 제외하나 심의 대상에는 포함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 지원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5. 축제 관련 모든 사항과 기타 이벤트성 행사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축제 소관부서의 국·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축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 만료, 품위 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 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총괄책임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의 제출 및 심의)** ①축제 등과 관련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0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축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안전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축제 발전위원회의 조서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개최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축제 등의 결과 평가)** ①위원회는 축제 및 이벤트성 행사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고한 축제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시기의 다른 축제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평가방법은 3인 내지 5인 이내의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는 평가 소위원회 또는 조사용역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자로 할 수 있다.

④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역축제 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호
축 제 일반현황	축제명칭	
	기 간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주 죄	
	후 원	
심 의 요구사항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인)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별지 제2호서식)

##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심의조서

심의대상			
심의일시		장 소	
심의요구	신청자		심의 요구부서
	주 소		
심의 요구사항			
심의결과			

## &lt;심의 의견&gt;

심의 위원		의견	서명
직위	성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lt;참고사항&gt;

## 관내 축제\*행사 현황

(단위:백만원)

시기	명 칭	주 관	사업비	비고
2월	순흥동서부줄다리기	순흥면발전협의회	10	
6월	소백산칠쭉제	문화관광과	40	
6월	소백예술제	한국예총지부	30	
7월	영주푸른강수육축제	문화관광과	50	
9월	단산포도축제	단산포도작목회	20	
10월	영주풍기인삼축제	축제위원회	323	
10월	소백문화제	영주문화원	40	
10월	부석사화엄축제	화엄축제위원회	67	
10월	부석사과축제	부석면발전협의회	20	
12월	해넘이축제	총무과	10	